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33호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사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안 제3조)

나.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 의무(안 제4조)

다.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안 제7조)

####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 4. 의견제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부장관(참조 : 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oach530@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  
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3) 팩스 : 042-489-969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전화 : 042-481-4488, 44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를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및 절차)** ①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1호에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1억원이다.
2. 영 제4조제2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전문개인투자자 양성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가.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다만, 총 강의 시간은 50시간 이상일 것)

나. 교육 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다만, 교육 출석 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다.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 방식(주중, 주간 시간표 등)

②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

나. 투자실적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다.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기업 확인서(해당기업 투자시)

2.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가 영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신청인이 전문개인투자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

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개인투자자 투자 의무)** ① 법 제1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1억원이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자는 전문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할 당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제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유효기간 산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3제4항에서 정한 제출자료의 유효기간이라 함은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에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전 1개월에서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전문개인투자자 보고 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법 제72조,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구분 및 시기

가. 정기보고 : 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

나. 수시보고 : 매월 말일

2. 보고항목

가. 정기보고 : 투자실적(투자일, 투자액, 투자유형, 피투자기업 등)

나. 수시보고 : 변경된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정보, 변경된 투자실적, 변경된 경력 및 자격정보

②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개인투자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4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은 투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통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투자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투자확인서 발급의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시에는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등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용 : 직장소재 관할 확인기관

나.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소득공제용 : 개인 주소지 관할 확인기관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

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신청서

류가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⑤ 제4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이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투자일자의 산정기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일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투자일자는 피투자 벤처기업 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

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 일자

**제10조(세부지침의 제정)**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키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2017. 8.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은 폐지한다.

[별표 1] 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 1부.</li> <li>②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li> <li>③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li> <li>④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li> <li>-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투자의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li> <li>- 그 밖에 입금증빙이 가능한 서류</li> </ul> </li> <li>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li> <li>- 2호의 경우 기술성평가확인서 사본</li> <li>- 3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li> <li>- 4호의 경우 기술신용평가확인서 사본</li> </ul> </li> <li>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li> </ul>
주식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공증본이 없는 경우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li> </ul>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채인수 계약서 사본 1부.</li> </ul>

[별지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신청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신청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변경등록을 위한 업무처리
- (수집·이용할 항목) 전문개인투자자 개인식별정보 (성명, 투자실적 및 경력, 자격사항 등)
-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단, 존속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10년간 보관)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전문개인투자자 업무수탁자 : 한국엔젤투자협회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요건 해당 및 유지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전문개인투자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경력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단, 존속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10년간 보관)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2] 투자실적확인서

<b>투 자 실 적 확 인 서</b>						
투자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투자기업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설립일		자본금			
	총발행주식수		액면가		업종	
	소재지(주소)					
<b>투 자 명 세 표</b>						
① 보유기간		② 주식수	③ 투자금액(원)	④ 지분율	⑤ 비고	
투자일자~ 회수일자	기간					
계						
<p>위와 같이 투자내역을 정히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margin-right: 100px;">확인자 (주)</span> <span style="margin-right: 100px;">대표이사</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p> <p>(사)한국엔젤협회 협회장 귀하</p>						
<p>첨부서류</p> <p>① 투자계약서 사본</p> <p>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p> <p>③ 주주명부(투자자 등재분)</p>						

[별지 3]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			
제 출 처	[ ]원천징수 의무자	④ 법인명(상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 ]납세자조합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자(투자)금액명세

⑩ 출자일 (투자일)	출자(투자)내역				⑮ 출자금 액 (투자금액)	벤처기업투자내역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⑯ 투자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⑪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 ⑯ ~ ⑱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별지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법인명 (상호)		설립일자 (사업개시일)	① 20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주소(본점)		업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 해당여부			여 / 부
대표자(성명)		용도	소득공제 증빙용
과세연도	20 . . . ~ 20 . . .		

①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6]을 참조하여 작성)

1)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고시)일	해당연구인력	② 원
	20 . . . .	명	
재료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③ 원	④ 원	
2)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⑤ 원
3) 인력개발비	교육비	현장훈련 수당 등	
	⑥ 원	⑥ 원	
4) 기타	⑦		원
총 계			원

②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⑧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회계법인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작성 방법

- ① 설립일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일자 (단, 관련사업 개인사업자 후 법인 등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기일 기준)
- ②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1/가/1) 자체연구개발 비용 중 인건비
- ③ 견본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1/가/2) 자체연구개발 비용 중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
- ④ 임차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1/가/3) 자체연구개발 비용 중 연구, 시험용 시설 임차
- ⑤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1/나/1)~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 ⑥ 교육 및 현장훈련 수당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 인력개발 가~바에 따른 교육, 훈련, 현장훈련 수당비
- ⑦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1 연구개발 다~사에 따른 비용
- ⑧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한 금액

